

# RCPG를 통해 본 16세기 제네바교회 목사임직 연구<sup>1</sup>

임종구  
(푸른초장교회)

## [초록]

1509년에 출생해서 1564년에 죽기까지 칼빈은 생애의 전반부 28년을 제네바를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나머지 생애의 후반부 28년을 제네바에서의 교회건설에 투신하였다. 불시착과도 같았던 1536년의 첫 체류는 추방, 복귀, 투쟁, 건설이라는 굴곡진 연대기를 형성하지만, 이 프랑스 망명 지식인의 분투는 르네상스를 펴크럼(fulcrum) 삼아 근대사회를 여는 ‘촉진자(Facilitator)’가 되었다. 개혁자는 유년시절 모친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유학생활동을 통해 인문주의의 모유를 먹고 성장했으며, 인문주의자이자 신학자로 교회건설의 전장(戰場)에서 거대한 종교권력이 주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도시의 건설을 위한 용기 있는 생애를 살았다.

논문투고일 2016.12.11. / 심사완료일 2017.08.30. / 게재확정일 2017.09.15.

1 본고는 임종구, “제네바 목사회(1536-1564)에 따른 칼뱅의 활동과 신학에 관한 고찰 \_Reflections on Calvin’s Activities and Theology According to the Company of Pastors in Geneva(1536-1564)” (Ph.D., 총신대학교, 2015). 및 임종구, 『칼빈과 제네바목사회』(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에서 전문요약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러나 개혁자의 신학과 업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근대를 열었던 개척자로 평가되는가 하면 제네바의 독재자라는 일방적인 시선으로 조명되기도 한다. 그는 지나치게 숭상되기도 하고 때로 가혹하게 폄하되기도 했다. 이 제네바의 사람은 책사이자 목사였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 자유와 관용, 신학과 윤리에서 개혁자의 이상과 제네바의 현실은 그의 고단했던 교회건설의 딜레마를 보게 한다. 그렇다면 개혁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무엇인가? 그의 신학과 사상은 오늘 현대사회와 교회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소위 ‘칼빈주의’가 한국교회에서 스콜라주의(Scholasticism)로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넓은 개혁주의의 지평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이자 균형 잡힌 연구로서 제네바 목사회(CPG)의 회의록(RCPG)연구는 필연적 요청이었다.

『제네바 목사회 회의록』은 급박했던 이 도시의 개혁과 투쟁을 조건신문처럼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있다. 불쑥 불쑥 튀어나오는 사건들과 긴박했던 기소문과 공개 질의서에서 기독교강요에서와는 다른 현장의 긴박감과 칼빈텍스트에만 길들여졌던 이들에게는 다소 당혹스런 현실들이 전개되어진다. 『기독교 강요』가 제네바의 신학이라면 목사회 회의록은 제네바의 현장이라고 할 것이다.

**키워드:** RCPG, 제네바목사회, 목사임직, 칼빈, 콩그레가سیون

## 1. 들어가며

칼빈의 제네바교회를 개혁교회의 모범과 원리로 상정하고 그의 교회건설의 과정을 전개할 때에 그 단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1차 체류와 2차 체류로<sup>2</sup> 구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1차 체류를 칼빈의 초기사상<sup>3</sup>이라고 한다면 2차 체류는 본격적인 칼빈의 목회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의 초기사상에는 칼빈의 교회론, 내지는 목회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사증직제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트라스부르 체류 이후의 그의 교회론에는 4증직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sup>4</sup> 개혁자의 교회건설에 대한 초기구상에는 오직 목사만이 등장한다. 종교개혁이 참 교회와의 분리가 아닌 로마교황제도와의 분리라는 개혁자의 생각과 주교를 대체할 성직시스템을 목사로 구상하고 있는 개혁자에게 있어 목사의 개념은 그의 초기사상과 아울러 종교개혁과 교회론의 배경이 되는 교회의

2 1차 체류(1536-1538) 2차 체류(1541-1564), 그리고 스트라스부르(1538-1541)체류를 본 논문에서는 제네바 사역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해한다.

3 개혁자의 초기사상이라고 할 때 그의 저작을 중심으로,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Commentary on Seneca's De Clementia*, 1532), 콕의 강연(*Concio Academica*, 1533), 영혼수면론 논박(*Psychopannychia*, 1534, 1542), 올리베탕의 불어성경 서문(*Préface à la Bible*, 1535), 로잔회의 연설(*Deux Discours*, 1536), 두 서신(*Epistolae Duae*, 1537), 신앙교육서(*Catéchism*, 1537, 1538), 사톨레토에게 주는 답신(*Responsio ad Sadoleto*, 1539), 성만찬 소고(*Petit Traité de la Sainte Cène*, 1541), 1541년 교회법령 초안(*Ordonnances Ecclesiastiques*, 1541)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목록만이 진정한 칼빈의 초기사상이라고 본다. 1541년의 교회법령은 25인회와 200인회를 거치면서 논란과 수정이 가해졌고, 결국 목사회 회의록에 남아 있는 1541년 11월 20일 통과된 법령은 초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볼페르트 더 흐레이프(W. de Greef)는 칼빈의 생애와 저서들에서 칼빈의 초기저작물을 니콜라 뒤슈맹의 반박문에 대한 서문(1531), 세네카의 관용론주석(1532), 콕의 연설(1533)까지로 보고 있다. W.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칼빈의 생애와 저서들』 황대우, 김미정 역(서울: SFC, 2006), 121. 한편, 황정옥은 영혼수면론 논박의 1534년과 1536년의 서문을 상호비교하면서 청년 칼빈의 초기사상을 연구했다. 황정옥, 『칼빈의 초기사상연구: 청년 칼빈과 싸이코파니키아』(오산:한신대학교출판부, 2000), 17-203.

4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에서 교회의 4가지 질서와 목사의 의무에 대해 적고 있다. 교회에서의 4가지 질서, 먼저 우리 주께서 그의 교회 통치를 위해 세우신 공적인 직분 네 개가 있다: 첫째로는 목사, 둘째로는 교사, 셋째로는 장로 다르게는 영주의 대표자로 불린다. 넷째로는 집사이다. 만약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유지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통치형태를 지켜야 한다. *RCPG, I, 2: RCPG. Tr, Hughes, Philip E. Hughes,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Wipe and Stock, 1966. \*이 후로 약어 RCPG. Tr, Hughes는 편의상 Hughes로 약칭한다. Hughes, 36. 제네바목사회 회의록(1546-1564)의 한글번역본문은 논자의 미출판 번역본이다.

표지와도 관련되어진다. 그가 교회의 표지를 말씀의 증거와 성례전의 시행이라고 보았다면 그것은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 실현되어졌다. 그러나 교회의 표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일에는 권징이라는 보조적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개혁자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권징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1541년 제네바 2차 체류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칼빈의 초기 사상속에서의 직분론에서 장로는 교회의 표지를 수행하는 목사를 도와 권징을 함께 도모하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sup>5</sup>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합동)의 헌법<sup>6</sup>을 보면 회의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목사와 장로라는 개념이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교회의 표지에서 발견되어지는 목양적 차원으로서의 목사직의 의미는 희석되어 있다.<sup>7</sup>

이제 제100회<sup>8</sup>를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헌법을 개정하려는 상황에서 개혁교회의 원리에 따른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표지에 따른 목사직의 설명과 아울러 성경적인 직분관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네바목사회 회의록(RCPG)<sup>9</sup>을 통해 교회 건설자가 어떻게 제네바교회의

5 기독교강요 초판에는 치리장로직이 나오지 않는다. 칼빈은 '성례라고 잘못 불린 다섯 가지 의식'에서 신품성사를 비판하면서 개혁교회의 직분론을 전개한다. 그는 목사를 말하고 사도행전을 따라 집사를 말하고 있다. "나는 사제와 주교를 차별 없이 교회의 사역자라 부른다." *Inst.* 1541(프랑스어초판), 4.3.10. "비록 부제품(Dyacre)이란 용어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가 구호 금품을 분해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의 공공재의 재정 담당관과 분배 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들을 특별히 집사(부제)라 칭한다." 4.3.9. 『칼뱅 기독교강요 프랑스어 초판 1541』 박건택 역 (서울: 크리스천 르네상스, 2015), 815-35.

6 제3장 교회직원. 제2조 교회의 향존직(恒存職). 교회의 향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20:17, 28, 딤후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로 일컫고 2.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향존직의 시무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부, 1993), 152.

7 2015년 통계에 의하면 합동교단의 교회수는 1만 1700여 교회, 목사수는 2만 3천명으로 알려져 있다. 교단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목사, 장로의 직분의 정치적 성향이 강해지고 교회표지의 말씀과 성례전을 맡은 직분적 의미는 희석되고 있다.

8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가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열렸다.

9 제네바목사회회의록(RCPG)이 Registers는 Robert M. Kingdon, Jean-François Bergier, Alain Dufour에 의해 편집되고 Librairie Droz에서 1964년에 제1권(1546-1553)이 출판된 이래, 2001년에 와서 제13권(1617-1618)이 출간되었다. 한편 목사회의 Registers가 영어판으로 에디터된 것은 1966년의 Philip E. Hughes가 번역, 편집한 "The Register of Company

목사를 임직하였는가에 대해 다루는 작업을 통해 목사의 의의와 임직의 엄중함과 절차에 대한 신중함을 살펴보고 오늘날 개혁교회에 적용할 내용들을 찾아내려고 한다. 아울러 개혁자의 교회건설의 구상에서 목사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네바교회 목사임직은 그 이미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런 성찰의 배경에서 오늘날 목회자양성과정과 임직시스템에 대한 미력한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이다.

## II. 제네바목사회 회원

제네바교회의 목사들은 제네바의 5명의 목사와 3명의 조수와 함께 베른 영지의 시골교구에서 사역하는 목사들로 구성된다. 제네바목사회의 명단을 보면 이어릭 더 부어는 토론의 의제가 기록된 시점인 1545년에서 1552년까지의 명단을 그의 저서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sup>10</sup> 하지만 이 명단은 총 40편의 문서와 30명의 저자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그 명단의 수가 27명의 목사만이 소개되었다. 또한 네피는 1538년에서 1554년의 제네바 목사들의 명단<sup>11</sup>을 다루고 있는데 칼빈의 제네바 생애와 사역에서의 목회자들이 다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최근 자신의 논문을 책으로 출판한 스캇 마네치(Scott M. Manetsch)는 부록에 1536년에서 1609년까지의 제네바 목사명단 136명을 싣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제네바 목사회의 회의록 전체(1541

---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이 있다. *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1546-1553*. ed. Bergier, Jean-François. Tome Premier. Geneva: Droz, 1964;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ed. Philip E. Hughes, Wipe and Stock, 1966. Cf. RCPG는 Tome. II가 Tome Premier보다 먼저 출간되었다. Kingdon, M. Robert, *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1553-1564 Tome. II*. (Geneva: Droz, 1962).

10 Boer, *The Genevan School*, 93-112.

11 William Naphy, *Calvin and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58.

년-1564년)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바 회의록에 등장하는 목사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목사회는 광범위하여서 목사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지 목사만은 아니다. 콩그레가시옹에서는 소환된 평신도로부터 참관하기 위해 참석한 정부당국자들도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일단 칼빈의 제네바 사역(1541-1564) 가운데 기록되어진 회의록의 전체 인원을 분석하려고 하였다. 제네바목사회의 목사회원들의 면면은 표1에서 볼 수 있다. 제네바목사회의 회의록이 회원의 명단<sup>12</sup>을 수록한 것은 1547년 6월 3일자 회의록이다. 6월 9일 목요일에 베른회중의 대리인들에 의해 깅스에서 열리는 사제단 모임에 보내지는 신자들을 위한 제안서로 회의록은 말미에 '1547년 6월 3일 금요일 모인 신자들에 의해 통과되다.'라고 적혀 있고 목사회원들의 명단이 존 칼빈의 대표서명과 함께 22명이 수록되어 있다.

〈표1. 제네바 목사회 명단(1536-1564)〉

	이름	국적	목회지역	목회기간	건 책/비고
1	Guillaume Farel	Gap in Dauphine	Geneva 뇌사텔	1532	추방→뇌사텔 Designated 'Master' Pastor in Geneva
2	Peter Viret	스위스 보	오르베 제네바 로잔	1531 1541 1542	1542년 로잔으로 귀환
3	Antoine Froment	도피네, Mens	제네바	1533	1553 제네바의 공증인 1562년 간통으로 추방

12 제네바 목사회 목사 회원명단(1536-1564)은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윌리엄 네 피(William Naphy)가 1538년에서 1544년까지의 제네바 목사들 38명의 표를 작성한 바 있는데 3명의 목사 명단이 누락되어 있다. Antoine Saunier, Pierre Caroli, Malisier(Geneva, 보셰이, Geneva, 1544-1545), 세 사람이 해당된다. 스캇 마네치(Scott M. Manetsch)는 1536-1609년까지의 제네바 목사 130명의 명단을 자신의 논문에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536-1564년까지 칼빈의 제네바 사역기간 안에서 활동했던 72명의 제네바 목사들의 명단을 추적한다. 마네치의 명단에는 회의록에서 추론해 볼 때 2명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다. Antoine Froment, Pierre Caroli가 여기에 해당된다. 마네치는 네피가 누락한 Antoine Saunier, Malisier를 포함시키고 있고, 파렐을 편입시키면서도 프로망은 누락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네치와 네피가 공통으로 누락시킨 카롤리를 목사회의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름	국적	목회지역	목회기간	견 책/비고
					1574년 공증인으로 복귀
4	Antoine Saunier		Geneva	1536-1538	College de la Rive 학장 1538년 추방 후임: Castellio
5	Jacques Baud	Geneva	Celigy	1536-1543	Deposed
6	Christophe Fabri	Geneva	Geneva	1536	dit Libertat
7	Pierre Caroli		Alençon, 뇌사텔	1524 1536	1536: 뇌사텔, 로잔의 목사
8	Jean Calvin	Noyon in Picardy	Geneva 스트라스부르 Geneva	1536-1538 1538-1541 1541-1564	추방→스트라스부르 Designated 'Master' Pastor in Geneva
9	Elie Corault		Geneva	1536-1538	추방, 시각장애인
10	Marcout			1538-1540	1538년 베른파송목사 1540년 자진베른으로 귀환
11	Morland			1538-1540	1538년 베른파송목사 1540년 자진베른으로 귀환
12	Henri de la Mare		Geneva Jussy	1536-1543 1543-1546	1538년 베른파송목사 1546년 면직
13	Jacques Bernard		Geneva Satigny	1536 1542	1538년 베른파송목사
14	A. Rabier		지방	1536-1540	1541년 사임
15	P. Denise		지방	1538	1539년 사임
16	François, du Pont	Agen	Monëns	1538-1543	
17	AiméChampere au		Geneva	1540-1544	d.1545

	이름	국적	목회지역	목회기간	건 책/비고
18	Vandert		지방	1541	d.1542
19	Blanchet		Geneva	1542	d.1543
20	Aymé Méigert	Auxerre	Geneva Moëns, Genthod	1542-1544 1544-1546	Deposed
21	Mattieu De Geneston		Geneva	1542-1544	d.1545
22	Treppereaux		Geneva 지방	1542-1543 1544-1553	d.1554
23	Philippe de Ecclesia		Geneva Vandoeu vres	1542-1543 1544-1553	1549년 견책 Deposed-1553 d.1554
24	Abelus Poupins	Agénois	Jissy Geneva	1543 1543-1547 1548-1556	Designated as Master in Consistory
25	Nicolas des Gallars		Geneva 프랑스 런던	1544-1552 1553 1563-1564	Colloquy of Possy
26	Louis Cugniez	Ange	Geneva Russin, Dardagny	1544 1544-1552	
27	Simon Moreau	Tourraine	Bossey	1544-1545	Deposed
28	Nicolas Petit	Paris	Geneva Chancy Draillans	1544 1544-1547 1557-1578	d.1578 Designated as Master in Consistory
39	Jean, Ferron	Poitiers	Geneva	1544-1549	Deposed
30	Pierre de Lescluse	Paris	Neydens Bossey Geneva	1544 1544-1545	Deposed
31	Pierre, Ninaux	Touraine	Geneva Draillans	1544-1545 1545-1554	
32	Jean, Regalis		Draillans	1544-1545	



	이름	국적	목회지역	목회기간	견 책/비고
33	Francoys Bougoing	Nevers	Bossey Geneva Jussy	1545 1545-1552 1552-1563	
34	Raymond Chauvet	Celli	Geneva	1545-1570	d.1570 Designated as Master in Consistory
35	M. Cop	바젤	Geneva	1545-1566	Nicolas Cop의 동생
36	Malisier		Geneva 보세이 Geneva	1544 1545 ?	
37	Jean, Péyéry	Montauban	Neydens	1545-1561	
38	Jehan Baidin	St-Romain-du-Gard	Jussy Miens,Ge nthod	1546-1548 1548-1559	Designated as Master in Consistory
39	Jean Chapuis	Lyon	Valeiry	1546-1557	
40	Jean De St, André	Besançon	Moëns Jussy Geneva	1546-1548 1548-1552 1552-1557	d.1557 Designated as Master in Consistory
41	Jean Fabri	Larche	Geneva	1549-1556	Deposed
42	Nicolas, Colladon	Berry	Vandoeuvres Geneva	1553-1557 1557-1571	Studied Lausanne Deposed
43	Jean Macard	Provence	Russin Geneva	1553-1556 1556-1560	Designated as Master in Consistory
44	Louis, Enoch	Issoudun	Geneva	1554-1567	
45	André Le Court	Issoire	Céligny Chrtigny	1554-1557 1557-1562	
46	Jean, Montliard	Picardy	Geneva	1557-1563	One Time Doctor in Sorbonne
47	Pierre d', Airebaudouze	Nîmes	Jussy Geneva	1555-1560 1560-1561	
48	Claude, Baduel	Nîmes	Geneva Russin Vandoeuvres	1556 1556-1557 1556-1561	Studied at Nîmes, Paris, Wittenberg
49	Claude, du Pont	Blois	Geneva	1557-1559	Studied at Geneva Academy

	이름	국적	목회지역	목회기간	건 책/비고
50	Mattieu, Grandjean	Charité	Geneva Russin	1557-1561	Designated as Master in Consistory
51	François, Morel	Collonges	Geneva	1557 1560-1562	
52	Jean de Pleurs	Troyes	Bossey	1557-1570	
53	Theodore, Beza	Vézelay	Geneva Professor	1559-1605 1559-1599	Studied at Orléans, Bourges
54	Jean-Raymond, Merlin	Dauphiné	Peney Geneva	1559 1559-1564	Professor at Lausanne Deposed
55	Gaspard, Carmel	Marcellin	Moëns	1560	Studied at Basel
56	Jean, la Roche		Vandoeuvres	1560-1562	
57	Charles, Maubué	Berry	Moëns Geneva	1560-1564 1564-1566	Regent at Collège
58	Jean, Pinault	Poitiers	Jusy Geneva	1560-1566 1566-1606	Studied at Geneva Academy
59	Etienne, Trembley	Lyon	Peney Geneva	1560-1564 1564-1596	Rectot at Collège
60	Jean, du Perril	Geneva	Neydens Vandoeuvres	1561-1581 1583-1598	Designated as Master in Consistory
61	Pierre, le Due	St, Didier	Russin Vandoeuvres	1561-1562 1562	Designated as Master in Consistory
62	Bonaventure, Bertram	Thouars	Chancy Geneva	1562-1566 1566-1587	Professor of Hebrew 1567-1586
63	Gilles, Chausse	Chanteloup	Vandoeuvres Geneva	1562-1566 1567-1574	
64	Gaspard, la Faverge	St, Joire	Russin Geneva	1562-1566 1566-1571	
65	Jean, le Gaigneux	Tours	Geneva	1562-1571	Deposed
66	Claude, Marquis		Chancy	1562	
67	Maurice, Viret	Chablais	Geneva Draillans	1562-1578 1578-1586	
68	Jean, Hellin	Picardy	Céligny	1563-1564	
69	Jacques,	Bordeaux	Geneva	1564-1566	

	이름	국적	목회지역	목회기간	견 책/비고
	Desbordes				
70	Louis, Henry	Picardy	Céligny	1564-1571	Deposed
71	Charles, Perrot	Paris	Moëns Geneva	1564-1566 1566-1608	Professor of Theology
72	Charles, Denis	Paris	Satigny	1564-1566	Studied at Geneva Academy

## 1. 목사의 선발

목사를 세우는 과정에는 자격심사, 임직절차, 임직의식이 있었다. 목사후보자의 교리와 생활을 심사하는 일을 목사회가 맡았다. 목사회는 교리에 관하여 훌륭하고 건전한 성경지식, 공인된 교리의 수용여부, 가르칠 능력을 살펴보고, 생활에 관해서는 좋은 생활습관과 흠 없는 행동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목사후보생이 결정되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신자들의 공동의 동의로 수용되었다.

### 목사의 시험<sup>13</sup>

시험은 두 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임명된 자가 선하고 건전한 말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교리에 관련된 것이고 또 그가 교회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말씀을 받는 자에게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는 그가 교회에 의해 승인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고수한다는 선언을 해야 했다. 그가 가르침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심의와 개인적으로 그가 주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을 듣는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는 그의 삶에 관한 것이었다. 즉, 그가 도덕적이고 책망 없이도 바르게 처신하는지의 여부였다.

임직을 받은 목사는 시장 앞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했다.<sup>14</sup>

<sup>13</sup> RCPG, I, 2: *hughes*, 36.

임직방식은 구시대의 의식과 미신들을 청산하는 것으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임직에 대한 선포와 권면을 행하고, 이어서 주님이 그에게 일에 전념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와 간구를 한 후, 시 의회 앞에서 서약했다.

## 2. 목사의 규범

교회법령에게 가장 심각한 어조로 강조되어지는 것은 목사에 대한 규범인데 구체적이면서 엄정했다.

### 목회자 징계<sup>15</sup>

논란이 되는 행동을 없애기 위해 아래에 나온 것처럼 목회자들이 따를 수 있는 그들을 위한 징계가 필요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존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랄한 목회자들에 의해 수치스럽고 경멸 받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주었다. 그럴 만한 사람에게 규율이 부과되는 것처럼 중상 모략하는 자들과 결백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짓보고를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직자에게 용납될 수 없는 범죄와 공제의 책망

- 
- 14 임직방식에 관해서 구시대의 의식들이 시대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많은 미신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임직에 대한 선포와 권면을 행하고, 이어서 주님이 그에게 일에 전념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와 간구를 가는 것으로 족하다. 그가 선출되면 정부당국의 관할 하에 서약해야 한다. *RCPG, I, 2-3; Hughes, 36-37.*
- 15 목사에게 용납되지 않는 범죄, 이단, (특히 종파의) 분립, 기독교 질서예의 반항, 공개적이고 처벌을 받을만한 신성모독, 성직 매매와 뇌물로 인한 타락, 다른 사람의 직위를 빼앗으려는 모의, 적법한 허락과 진실된 소명 없이 자신의 교회를 떠나는 것, 배반, 위증, 간음, 절도, 술 취함, 법에 의해 처벌받을 만한 폭행, 고리대금업, 법으로 금지되고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게임, 춤추는 것과 그와 비슷한 무절제한, 시민들 사이에 악명을 낳는 위법행위, 교회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위법행위, 힐책 받는다면 용인 되는 행위, 논란을 낳는 말씀을 대하는 이상한 방법, 헛된 질문을 찾아내는 호기심,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방식이나 교리를 제기하는 것, 특별히 성경을 읽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에 태만한 것, 아침과 관련된 행동을 꾸짖는 것에 태만한 것,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태만한 것, (저속한) 익살, 사기, 명예훼손, 경솔함, 흥겨 꾸미기, 탐욕과 인색함, 무절제한 분노, (공공장소에서의) 싸움과 말다툼, 의복이나 행동 그 외 다른 면에서 목회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방종. *RCPG, I, 3-5; Hughes, 38-39.*

을 받는다면 용인되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 언급되어야 했다.

### 3. 목사의 견책

목사의 견책은 1541년 법령에서 구체화되었다. 일 년 4차례 분기별로 형제애적인 견책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금요일 오후모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목사회의 몇몇 사건들이 실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법령은 목사의 범죄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sup>16</sup>

### 4. 목사회의 운영

목사회는 매주 금요일에 모이는 것으로 법령이 명시하고 있다. 금요일 오전에는 성경연구모임으로 모였고, 오후에는 세 달에 한번 있는 견책모임을 비롯한 목사회의 행정과 신학의 문제를 토론하는 모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골교구의 목회자들은 때로 참석이 용이하지 못했고 1546년에는 시골교구를 시찰하는 법령으로 보완되었다. 목회자들은 한 달 내내 참석하지 못하면 태만으로 여겨져 견책에 회부되었고, 신병 등 소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가 되었다. 목사회는 사회와 시의회, 치리회에서 목사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서기, 그리고 회원으로 이루어졌다. 목사회의 행정실무로는 목사의 시험과 선발, 임지 추천 등이 있었다.

### 5. 목사회의 기능

16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만약 그 범법행위가 민사상의 범법 행위라면, 다시 말해서 법에 의해 처벌받을 만하고 어떤 목회자가 유죄라면, 그 판구가 그 사건을 맡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례상 부가되는 보통의 형벌에 더하여 그를 그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그를 처벌한다. 첫 번째 조사가 치리회에 속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대표들과 혹은 장로가 목회자와 함께 조사한다. 그리고 만약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그들의 결정과 판결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과 관련된 최종 판결은 판구에 있다. 간단한 책망으로 고쳐질 행위들에 대해서는, 절차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건이 판결을 위해 교회로 맡겨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당연히 지시에 따라야 한다. 3달에 한번 견책하는 날 정하기. 이 징계의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 세 달마다 목회자들은 그들 가운데 범죄의 가능성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바로 잡아야 한다. *RCPG*, I, 3-5; *Hughes*, 38-39.

목사회는 대략 다섯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첫째는 목사 후보생을 심사하는 것이다. 둘째는 매주 목요일에 모여 성경을 강론하고 교리를 토론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목사들의 생활을 감독하는 것, 넷째는 설교와 심방, 다섯째는 아카데미에서 강의하는 것이었다.

## 6. 목사회와 회의록

제네바 목사회 회의록은 1546년부터 시작되고 있다. 물론 회의록의 첫 부분은 1541년의 교회법령이 서두에 나온다. 현재 제네바 목사회 회의록은 제13권(1617-1618)까지 출간되어 있다. 이 경이로운 작업은 로버트 킹턴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는 자신의 생애전부를 이 자료발간에 투신했다. 회의록(1, 2권, 1546-1564)에는 6개의 교회법령과 44건의 서신과 151건의 교회행정, 사건고소 42건, 민원 9건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제네바 목사회 회의록(RCPG, t. I:1546-1553, t. II:1553-1564)은 전체 254건의 기록되어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행정으로 151건, 서신 44건, 법령 6건, 고소 36건, 사건 6건, 민원 9건, 기타2건이다. 행정에서는 목사의 선출, 임명, 추천, 해임, 이동, 유고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행정이 32건, 외교가 12건을 차지했다. 고소에는 목사의 고소건이 13건, 일반인이 8건이었고, 5개의 기소문과, 각각 3개의 질의서, 답변서, 의견서와 1개의 결정문이 첨부되었다. 사건은 6건을 다루고 있고, 사회적 사건이 3건, 정치적 사건이 2건, 신학적 사건이 1건이 다루어졌다. 민원은 이혼과 결혼의 증명서발급이 4건, 일반인 증명서와 민원이 5건이 있었고, 1건의 신앙고백요약과 1건의 교회일치신조와 2건의 성명서발표가 있다.

## Ⅲ. 목사의 양성과 선출

목사의 양성은 개혁도시들이 늘어나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런 개혁도시

들로 망명하는 신자들의 유입으로 절대적인 목사의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아직 교리적 일치와 옛 성직자들과는 차별적 우위를 요청받는 상황에서 목사들의 꼼꼼한 시험과 선출, 지속적인 교육과 견책의 필요성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미 개혁자가 교회법령에서도 그 필요성과 강력한 의지를 적시했듯이<sup>17</sup> 비단 이런 교육의 필요성은 단지 목사들의 양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칼빈은 1537년 기초법령에서 백성을 교리의 순수함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교리가 실추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sup>18</sup> 또 1541년 표준법령에서도 대학의 설립을 비롯한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19</sup> 이렇게 교육은 개혁을 선언한 도시의 전 시민, 전 세대, 전 계층을 위해서 필요했고, 이런 집중적인 교육의 체계만이 개혁을 공고히 하는 방편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물론 이런 가장 가시적인 결과는 1559년에 가서야 열매를 맺게 되지만 교회설립의 초기부터 이런 도시개혁의 설계도는 그려져 있었다.

## 1. 목사의 양성

목사의 양성은 제네바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학교의 설립은 1559년에 가서야 가능했다. 제네바아카데미가 설립되기 전의 목사의 양성을 위한 일종의 신학교는 아카데미와 다른 명칭의 콜레주(Collège)가 있었다. 제네바가 개혁신앙을 받아들였을 당시 제네바에는 ‘콜레주 드

17 칼빈은 1536년 교회설립시안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18 1537년의 칼빈의 교회설립시안은 회의록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1537년과 1538년의 교회설립시안은 준비법령으로 불릴 수 있다. “*Articles de 1537*” (CHE, 1-13), 박건택, 『칼뱅작품선집Ⅱ』, 323-36.

19 1541년 의 교회법령은 본 법령으로 불릴 수 있다. 회의록은 이 법령을 母法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회의록의 첫머리는 이 법령으로 시작하고 있다. 교회법령은 이 후 추가적인 법령을 첨가하고 있지만 회의록에서는 1561년의 최종법령을 신지 않고 있다. 최종적이고 발전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목사회 회의록이 1541년판만을 신고 있는 것이 바로 1541년 교회법령의 위치와 무게를 말해주고 있다. Jean-François Bergier, *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Tome Premier 1546-1553*, 1-3; Philip E. Hughes, *The Register of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35-49.

리브'(Collège de Rive)가 있었고 제네바 아카데미가 세워지기까지 이 학교가 제네바의 교육을 담당했다. 이 학교는 라틴어를 중심으로 강의했고 상급반에서는 구약과 신학이 파렐과 칼빈에 의해서 강의되었다. 제네바 아카데미가 있기 전 주변 개혁도시들에도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바젤의 대학과, 로잔아카데미가 있었고,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요하네스 슈투름(1507-1589)이 세운 김나지움과 고등교육기관이 있었다. 1541년의 교회 법령은 제네바아카데미와 같은 신앙교육과 목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행령은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1561년판 최종법령은 1559년에 설립된 아카데미에 대한 규정을 적고 있다.<sup>20</sup>

제네바 아카데미<sup>21</sup>는 공립예비학교인 스콜라 프리바타(schola privata)와 고등교육기관인 스콜라 푸블리카(schola publica)의 두 개의 학제로 구성되었다. 목사의 양성은 푸블리카에서 이루어졌는데 신학과 구약, 그리

<sup>20</sup>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s de 1561*. 이어서 우리가 교사라고 명명한 두 번째 규정 내지는 신분이다. 교사들의 고유한 직무를 신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가르쳐서 복음의 순수함이 무지나 잘못된 견해로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 칭호를 하나님의 교리를 보존하기 위한 도구요, 또 목사들과 사역자들의 부족으로 교회가 황폐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들로 이해한다. 이처럼 보다 감지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자면 우리는 이 칭호를 학교 교육직분(Ordre des écoles)이라고 부를 것이다. 목회자에게 가장 가깝고 또 교회통치에 가장 밀접한 단계는 신학 강의로서 여기엔 구약과 신약이 있음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언어들과 인문과학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는 이런 신학공부에서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황폐한 교회를 남겨두지 않도록 장래를 위한 씨를 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시킬 콜레주(Collège)를 세워 목회사역과 시 정부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킴이 마땅할 것이다.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학교규정(Ordre des Ecoles)집에서 찾아질 것이다. 도시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다른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되나 여자아이들은 이미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별도로 그들의 학교가 있어야 한다. CO, X, 91-124; 박건택, 『칼뱅작품선집Ⅶ』, 649-50.

<sup>21</sup> 제네바아카데미에 대한 연구는 카렌 마그(Karin Maag)의 *Seminary or University?*가 가장 최근의 연구물이다. 2011년에 박건택이 처음 번역해서 출간했고, 이어 2014년에 황대우가 제네바 아카데미규정집을 번역했고, 2009년 박경수가 제네바 아카데미에 대한 소논문들 자신의 책에 실었다. Karin Maag, *Seminary or University? The Geneva Academy and Reformed Higher Education* (Aldershot: Scholar Press, 1995); 박건택, 『칼뱅작품선집Ⅶ』, 614-34. 황대우, “제네바아카데미규정,” 『갱신과 부흥』Vol. 13 (2014): 84-99;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311-35.



스어 수사학자들과 시인들, 윤리, 물리학과 수학, 논리학들이 강의되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에 목사에게 주해를 배웠고 매달 소논문을 제출했다. 이 학생들은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후보생들이었고, 신학교수들은 목사회회 회합인 주간성경연구모임에 참석해야 했다. 신학교수들 상호간의 교리나 신학논쟁은 목사회회를 통해서 해결했다.

## 2. 목사의 선출

목사의 선출은 제네바의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목사에 대한 시험과 선발 등 목사선출의 실질적인 역할은 목사회에 있지만 법적인 승인, 최종적인 권위, 임직서약은 시의회가 가졌다. 또한 목사의 선출은 비정기적이었다. 주로 목사의 소천으로 인한 유고와 견책으로 인한 해임, 사건 등의 문제로 사역지 이동과 같은 상황에서 목사의 선출이 이루어졌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개혁교회의 수요로 인해 목사의 수급은 늘 어려움을 겪었다. 회의록은 총 86건의 목사선출을 기록하고 있다. 교회의 법령(1541)은 목사의 의무<sup>22</sup>와 소속<sup>23</sup>, 시험<sup>24</sup>, 선출<sup>25</sup>, 서약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회의록은 목사의 선출을 위한 세 가지의 필수항목은 시험이라는 공개적 방식과 반드시 목사회에 소속이 되어진다는 것과 목사직의 수행이라고 적고 있다.

목사의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목사회에 있었다. 시험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교리와 강론에 관한 것을 시험하고 나머지 하나는 목사후보자의 삶에 관한 문제, 즉 윤리에 관한 문제였다. 1541년판 법령과 1561년판 법령에서의 차이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목사의 임직과 관련된 1541년판 법령과 1561년판 법령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사의 소속, 즉 목사의 임명권과 절차에 관한 명시이다.

22 RCPG, I, 2; Hughes, 36.

23 RCPG, I, 2; Hughes, 36.

24 RCPG, I, 2; Hughes, 36.

25 CO, X, 91-92; 박건택, 『칼뱅작품선집Ⅶ』, 639-40.

목사의 소속, 즉 목사를 임명하는 것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하는 문제는 권징의 권한에 대한 법령의 해석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해온 제네바의 시의회와 목사회에 의해 오래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항목이다. 이런 법령해석의 모호성은 1561년 최종법령에서 아주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이와 같이 1561년의 법령은 갈등과 혼란의 논점(목사 임명은 누구의 소관인지의 문제이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1561년 규정은 1541년의 규정(고대 교회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면서 신자회(Compagnie des fideles)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회법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 이 문제는 제네바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고, 많은 소동을 가져왔다. 그 결과 1560년에 이 문제를 200인회에서 재확인하게 되고 그 때의 결의사항<sup>26</sup>을 1561년판 최종법령은 첨부하고 있다.

목사의 선출과정을 정리하면 목사회는 후보자를 도시의 영주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목사회가 이 후보자에 대해 평가와 시험에 돌입한다. 대개의 경우 이 사람에 대한 추천서가 필요했다. 회의록은 다수의 추천서 발급요청과 거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sup>27</sup> 목사회는 이

26 이 임직과정조항이 어떻게 합의되었는지 밝히고 기존 약속을 고치기 위해 1560년 2월 9일 200인회에서 통과되고 결정된 것을 덧붙임

상기 저명한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지적한 것, 즉 소개과정에 대해 만들어진 법령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위정자(Seigneurie)가 선정하고 수용한 자들이 승인될 것이지를 묻지도 않은 채 다만 교회에서 소개되었으며 그로 인해 백성과 교회단체가 그들의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에 관해서, 분명한 것은 처음에 바르게 제정된 것이 빛나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기한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지적한 것, 즉 이 모든 점에서 그들과 그들의 후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보다 엄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 첨부되었다. 우리는 또한 이전 법규가 그 내용에 따라 합당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결정했다. 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리와 실제의 결합이 없는 예식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마련했다. 즉 어떤 목회자가 선출되면 그 이름을 광고로 알리고, 그에 대해 비난할 것이 있는 사람은 그가 소개되어야 할 날 이전에 와서 그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직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선출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CO, X, 91-92; 박건택, 『칼뱅작품선집Ⅶ』, 640-41.

27 회의록에 등장하는 목사 및 종합구빈원, 아카데미의 교수직에 대한 추천서는 다음과 같다.

사람의 교리와 특히 주해 및 강론에 대한 평가를 했다. 강론의 본문은 미리 전달되었고, 설교자로서의 모든 부분, 심지어 목소리의 적합성까지 살펴보았다.<sup>28</sup> 목사회에서 추천되어진 사람은 시의회에 고지되고 시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바로 임직서약을 시 행정장관 앞에서 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역할 교구를 지정받고 그 지정받은 교구에서 설교하여 이의나 문제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사역을 하게 되고 임직의 모든 과정은 끝이 났다. 그러나 1561판 최종법령에서는 보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목사회에서 선출되고 시의회로 추천되어질 후보자를 광고를 통해 알리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 교구에 소개되어지기 전에 후보자를 알리고 교구의 사람들로 부터 이의가 없으면 계속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1541년의 법령에서 목사의 임명방식과 임명서약의 규범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임직서약문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1561년

- 
- (1) 1546년 1월 11일, 무슈 앙투안(Monsieur Antoine)과 토쇼 트로피움(Ptocho Trophium)에 대한 추천서 요청을 승인하며 칼빈의 대표 서명으로 발급. *Hughes*, 85-6.  
 (2) 1549년 4월 13일, 장 드라 바르(Jean de la Barre)에 대한 추천서 요청을 승인하며 칼빈의 대표 서명으로 발급. *Hughes*, 108.  
 (3) 1551년 11월 28일, 제네바목사회가 뇌샤텔에 보낸 헤랄더스에 대한 추천서. 칼빈의 대표 서명으로 발급. *Hughes*, 133-34.  
 (4) 1551년 11월 28일, 제네바목사회가 마티외 이소티에(Mathieu Issotier)에 대한 추천서 발급. *Hughes*, 136-37.  
 (5) 1552년 8월 5일, 마르티네고(Martinego) 이탈리아 목사의 추천, 책망과 교화를 담아 승인. *Hughes*, 192-93.  
 (6) 1552년 12월 2일, 베르나르 아르나이(Bernard Arnail) 의학박사에 대한 추천. *Hughes*, 206-07.  
 (7) 1553년 4월 10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목사회로 타프티에 니케즈(Tapetier Nicaise)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서신, *Hughes*, 215-16.  
 (8) 1553년 4월 22일, 제네바 목사회에서 (7)에 대한 답변서신, “당신들의 교회가 그런 가짜들, 그 전염병 같은 이들로 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칼빈을 포함한 목사 8명의 서명과 함께 발송됨. *Hughes*, 216-17.  
 (9) 1554년 9월 14일, 장 드 피오테(Jean de Piotay) 의사에 증명서 수여. *Hughes*, 297.  
 (10) 1555년 3월 8일, 앙투안 그르네(Antoine Grenet)에 대한 증명서 발급. *Hughes*, 307.  
**28** 1556년 4월 8일 클로드 바두르(M. Claude Badeul)가 목사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가 마들렌에서 설교할 때 그의 목소리가 설교자로서 너무 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RCPG*, II, 66-67; *Hughes*, 315.

최종법령은 목사의 시의회에서의 임직서약문<sup>29</sup>이 첨부되어 있다.

#### IV. 목사의 임직의 실제

회의록은 목사의 선출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진행과정, 최종 임명과 교구 지정, 그리고 목사의 선출과 관련된 갈등과 혼란, 시의회의 개입, 목사회 내부적인 갈등, 시험과 신원조회, 교리적 일치확인들의 사례가 풍부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 회의록은 총 86건의 목사선출과 관련된 기록을 남기고 있다.(표2. 참조)

##### (1) 해임에 따른 신입선출<sup>30</sup>

29 제네바 시에서 인정되고 수용된 복음적 목회자들이 시 대표들과 상기 시 의회 앞에서 행해야 할 약속과 서약의 방식과 서식

1. 나는 내가 부름 받은 직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되 그의 말씀을 순전하게 붙들어서 내게 맡겨진 이 교회를 교화할 것과 육적인 감정을 섬기기 위해서나 살아 있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의 교리를 남용하지 않고 건전한 양심으로 그의 영광을 섬기고 내가 빛진 자로 있는 그의 백성의 유익을 섬길 것을 약속하고 맹세한다.

2. 나는 또한 이 도시의 소 의회, 대 의회, 전체 의회를 통과한 대로 교회법규들을 준수할 것과, 실수한 자들을 훈계할 책임이 내게 주어진 이상, 증오나 편애나 보복이나 기타 육적 욕망에 빠지지 않고 충실 하게 의무를 다하며 전반적으로 선하고 신실한 목회자에 속한 것을 행할 것을 약속하고 맹세한다.

3. 셋째로, 나는 시 의회와 도시의 영예와 유익을 지키고 유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백성이 시 의회의 통치 하에서 평화와 연합 가운데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할 것과, 이에 어긋나는 것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으며, 변영이나 역경의 때에, 평화나 전쟁이나 역병이나 기타의 시기에서도 상기의 내 소명을 굽히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약속한다.

4. 마지막으로, 나는 도시의 정체와 규정에 복종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의 좋은 모범을 보이되, 내 직무로 할 수 있는 한 내 편에서 법과 위정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맹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갖도록 가르쳐야 할 자유를 침해함이 없이, 우리 직무에 속한 것들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맹세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시 의회와 백성을 섬기되, 이 일로 인해 내가 내 소명 안에서 마땅히 할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CO, X, 91-92; 박건택, 『칼뱅작품선집Ⅶ』, 641-42.

30 RCPG, I, 58-63; Hughes, 109-12.

1549년 9월에 장 페롱(M. Jean Ferron)의 해임에 따른 후임자 선발이 결정되었다. 페롱은 경솔한 행동으로 그의 목회직이 의심받았다. 그는 일방적으로 교구를 이탈했다. 또 페롱은 칼빈을 공격했다. 4년 동안 함께 사역했지만 유대감을 찾을 길 없었다고 말했다. 1549년 4월 13일에 칼빈은 잠시 물러나고, 이 문제의 진상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1549년 8월 30일에 페롱은 자신의 성적인 범죄에 관련되었음을 고백했다. 자신의 여종을 농락했다고 말했다. 1549년 9월 5일에 그 소녀가 출두하였고 다른 많은 혐의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결국 페롱은 해임되었다. 그러나 페롱은 해임결정을 통보받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세 걸음을 떼 뒤 뒤돌아서서 추천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페롱의 후임으로 파브리가 선출된다.

### (2) 목회자 소천에 따른 충원선출<sup>31</sup>

1552년 12월 16일 견책의 날에 뤼생(Russin)의 목사 루이 쿠니에(Louis Cugnier)의 소천으로 후임자를 충원하였다. 그는 시편110편을 해설했고, 히브리서 4장을 설교했다. 임직서약을 마치고 그는 니콜라 데 갈라르(Nicolas des Gallars)와 두 명의 성주와 함께 뤼생에 소개되기 위해 나아갔다.

### (3) 목회자 추방에 따른 교구이동배치<sup>32</sup>

1552년 3월 18일 장 드 생 앙드레(Jean de Saint-André)가 쥐시에서 추방됨에 따라 목사회는 교구이동배치를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된다.

## <표2. 제네바에서의 목사임직의 실제>

연도	1549.9	1552.3.18	1552.12.16
----	--------	-----------	------------

31 RCPG, I, 148-9; Hughes, 207-08.

32 RCPG, I, 132-3; Hughes, 187-90.

전임 목사	M. Jean Ferron	Jean de Saint-Andre	Louis Cougnier
신임 목사	Fabri	Fabri	Jean Macar
선출 사유	M. Jean Ferron 해임에 따른 후임자 선발	Andre가 설교하러가던 길에 체포되어 베른에서 추방되어 결원이 발생	Louis Cougnier소천에 따른 결원발생
후보자	여러 명이 추천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	목사회 결정사항 Andre-Geneva	단독후보
주해 본문	요일 5:7	Ecclessia-Jussy Fabri-Vandoeures 시의회 결정사항 Ecclessia-Vandoeures Fabri-Geneva Bourgoin-Jussy	시110편
이의 제기 및 갈등	목사인원에 대한 이의제기	Ecclessia와 Fabri의 반대 Bourgoin의 사임압박	없음
선출 일정	1549.05.03. - Jean Ferron해임 1549.09 -후임자선출결정 1549.09.13. -Fabri추천 및 주해본문 전달 1549.09 -목사수에 대해 이의제기 1549.10.14. -갈빈 계속 진행 선언 1549.10.18. -교리시험(요일5:7) 1549.10.19. -종교조항검토(1주) 1549.10.25. -첫 설교(요5:24) 1549.10.28. -보고 후 임직서약	1552.03.18. -Jussy선거식 1552.03.21. -목사회 의견발표 당사자들의 반대 -위정자의 단독결정 -목사회의 지시거부 -Messeur의 단독결정유효 1552.04.22. -Bourgoin의 사임 -Fabri가 Jussy 자원 1552.4.25. -갈빈의 향의방문 <b>-위정자의 수정철회거부</b> -Osias가 Ecclessia고소 1552.12.16. -Ecclessia맞고소 1552.12.23. -Messeur의 중재 1553.01.06.	1552.12.16. -견책의 날에 추가 선출 결정 1552.12.17. -Macar 선출 1552.12.19. -시110편 교리시험 1552.12 -히4장 설교시험 1553.01.04. -종교조항검토완료 1553.01.05. -임직서약 1553.01.06. -목사회에 통보 1553.01.08. -교구Russin에 소개
교리 시험	요일 5:7 주해	-재 변론 1553.01.27. -Ecclessia 해임	시110편
설교 시험	요 5:24 설교		히4
교구	교구에서 첫 설교, 설교보고자		

설교	3인 선정		
최종 보고	Tissot, Vandel, Roset	1553.05.12. -Colladon을 선출 1553.05 <u>-시의회의 일방적지시</u> -Bourgoin-Geneva des Gallars-Jussy 목사회외 거부	Gallars가 城主와 함께 감
임직 서약	Messieur에 서약	1553.07 -화목을 위해 수용함	Messieur에 서약
교구 배정	Geneva	Fabri- Jussy Andre-Geneva Colladon-Vandoeuvres	Russin

## V. 목사의 임직과 이동

목사의 임직절차가 오늘날과 다른 점은 그 도시의 영주에게 후보자를 고지하는 것과 임직서약을 시의회의 행정장관들 앞에서 한다는 점, 그리고 목사의 임명, 해임, 교구이동이 시의회에 권한이 있다는 점이다. 1541년 교회법령은 제네바교구의 목사의 정원을 아예 명시하고 있다.<sup>33</sup> 시의회가 목사회의 청문회와 추천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목사회의 추천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 (1) 1549년 4월 13일, 에클레시아에 대한 목사회의 면직결정을 시의회가 거부.<sup>34</sup>
- (2) 1552년 3월 21일, 쥐시의 목사선출에 목사회 결정을 거부하고 시의

<sup>33</sup> 5명의 목사와 3명의 조수의 임명

이것들과 그 밖에 사역에 필요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5명의 목사와 3명의 조수가 있을 필요가 있다. 조수는 목사인자로서 필요에 따라 돕고 협력한다. *RCPG*, I, 5; *Hughes*, 40.

<sup>34</sup> *RCPG*, I, 58; *Hughes*, 105-07.

회가 단독 결정.<sup>35</sup>

- (3) 1553년 5월, 시의회가 교구이동을 일방적으로 지시, 결국 목사회가 수용.<sup>36</sup>

그러나 이런 흐름은 1553년 11월에 갈등의 최고조를 경험하고 난 뒤, 1555년 1월 24일에 60인 의회와 200인 의회에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 하나가 되었다. 또한 목사회 내부의 갈등도 발견되어진다. 목사회 내부의 갈등은 주로 신학논쟁과 교구이동, 목사견책에서 발생했다. 목사회가 자체적으로 교구이동을 결정했을 때 거부하거나 사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1552년 3월 21일, 쥐시의 목사결정 때 에클레시아와 파브리가 거부.<sup>37</sup>
- (2) 1552년 12월 16일, 에클레시아가 목사회를 고소.<sup>38</sup>

뿐만 아니라 제네바의 목사들 가운데는 베른의 영토에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혁도시들 간의 교리의 차이, 정치와 외교의 갈등으로 추방을 당하여 교구를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특히 베른과의 관계에서 제네바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쥐시와 같은 임지는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였다. 베른에서는 예정교리를 설교할 경우 체포나 감금되었고 이 문제로 칼빈은 여러 차례 서신과 방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베른에서는 교리적 차이로 인해서, 프랑스에서는 신분이 노출되거나 병고로, 혹은 두려움에 의해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1) 1550년 10월 24일, 뒤랑(Durand)<sup>39</sup>과 니노(Ninaux)<sup>40</sup>를 교구이동

35 RCPG, I, 132-3; Hughes, 188-89.

36 RCPG, I, 160-1; Hughes, 222-23.

37 RCPG, I, 132-3; Hughes, 188-89.

38 RCPG, I, 145-6; Hughes, 203-04.



을 위해 출두공고.<sup>41</sup>

- (2) 1552년 3월, 쥐시의 앙드레가 베른으로부터 추방.<sup>42</sup>
- (3) 1553년 2월 11일, 베른의 셸리니(Céligny)에서 목회하는 트레프로(Treppereau)의 목회지 이탈.<sup>43</sup>
- (4) 1544 6월 3일, 드라이앙(draillans)의 니노의 무단이탈과 레이몽 쇼베(Raymond Chauvet)가 대신 설교했을 때 베른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벌금과 구류에 처함.<sup>44</sup>

39 뒤랑 카루(Durant Carroux)는 로데즈(Rodez)에서 왔고 아르무아(Armoy)에서 1544년 5월 30일부터 목회하였다. *Hughes*, 129.

40 피에르 니노(Pierre Ninnaux)는 1544년부터 드라이앙(Draillans)에서 목회하였다. *Hughes*, 129.

41 목사회는 베른과의 갈등을 염려하여 니노와 뒤랑의 교구를 조정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출두할 것을 통지하는 서신을 보냈다. 아르모아와 드라이앙은 샤블레(Chablais)에 있는데 이 교구들은 당시 베른의 사법권 안에 속해져 있었다. 하지만 제네바의 고대소유들이 연관된 이유로 이 교구의 목사를 지명하는 권한은 위정자에 보존되어 있었다. 문제는 뒤랑과 니노의 태도가 베른과 갈등을 촉발하기에 충분해서 드 포스(de Fosses)가 칼빈과 상의하고 두 목회자의 교구를 옮기는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RCPG*, I, 73-74; *Hughes*, 128.

42 베른지역에서 장 드 생 앙드레(Jean de Saint-André)의 추방. 일요일에 쥐시의 성직자인 앙드레는 풍스네(Foncenex)에서 설교 하려고 가는 길에 체포되어 경찰들로부터 수감되었으며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에 성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아닌 성탄의 성찬이라고 말하고 설교하였고 그 날을 다른 날 보다 더 크게 여기니 만찬의 신성함이 어떤 날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겼다. 이 이유로 감옥에서 심한 취급당했고 베른의 위정자들의 지역에서 추방당했다. *RCPG*, I, 132; *Hughes*, 187.

43 베른의 셸리니에서 목회하는 트레프로(Treppereau)가 무단으로 목회지를 이탈하여 제네바에 있으면서 베른에서 편지를 쓴 것처럼 처남인 페에르를 통해 목사회에 자신의 신상에 관한 서신을 보냈다. 이처럼 제네바는 선호하는 교구였지만 베른은 꺼려하는 교구였다. *RCPG*, I, 154; *Hughes*, 209-11.

44 Raymond Chauvet Arrested at draillans.  
6월 3일 제네바의 레이몽 쇼베는 그가 이미 일요일 날 방문했던 드라이앙으로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다. 그가 드라이앙의 관료로서 그들에 의해서 그가 제정했기는 했으나, 개인적인 일로 아무 허락 없이 프랑스로 가버린 그곳의 니노(M. Pierre Ninaux)의 부재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배 후에 토농의 직원은 레이몽을 기다리게 했다. 토농의 지방 행정관 앞에서 그가 나타나도록 요구했고 25프랑스 은화를 내게 했다. 레이몽드는 동의하고 주었다. 그 스스로 지방 관료에게 그리고 그는 물었다 왜 그가 드라이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 그가 대답했을 때, 그는 위정자의 순서 아래에 행하고 난 뒤였고. 그는 토농에서 체포의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제네바의 위정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들은 곧바로 염려했고

(5) 1557년 4월, 앙투안 바슐라르(Antonie Bachelar)가 리옹에서 되돌아 오음.<sup>45</sup>

더 많은 지역에서 목사의 파송을 요청해왔고 동시에 순교자도 생겨났다. 프랑스지역으로 보내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회의록은 약자를 사용하거나 파송된 지역을 아예 빈 칸으로 남겨두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목사의 임직과 이동에 대한 문제는 도시를 선호하고 농촌과 프랑스, 베른지역을 기피하는 문제였다.

## 1. 목사의 추천서

목사의 선출과정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후보자에 대한 교리적, 윤리적 검증이었다. 특히 타 도시에서 목회를 하거나 다른 국가로 갈 때에는 필연적으로 신원조회를 받아야 했다. 이것이 바로 신임장, 즉 추천서였다. 당시의 추천서는 목사와 의사와 교수의 선출과 관련해서 발급되었고, 증명서는 주로 정당한 결혼의 확인과 결혼 대상자로서 윤리적 하자가 없다는 것에 대한 목양적 증명서였다. 추천서는 어떤 도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구할 때 수신자가 지정되었지만 종종 어디에 정착해야할지, 어디서 사역을 하게 될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자의 지정 없이 추천서가 발급되었다.

(1) 1548년 11월 13일, 앙투안 무슈(Monsieur Antoine)에 대한 추천

그리고 그들은 관료의 행동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베른의 모임에 전갈을 보냈다. 이 날은 7월 15일을 가리킨다. 그러는 동안에 레이몬드는 체포되었고 그것은 관료가 길어지게 만들었고 쇼베의 비용에 관해 기도할 때 마지못해 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RCPG*, II, 56; *Hughes*, 295.

**45** 그 달 마지막 즈음에, 우리는 앙투안 바슈로르(Antonie Bachelar)에게 시험을 한 후에,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또한 조심스러운 요구를 그의 삶에 전달 한 뒤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리옹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몇몇 두세 달 후에 그는 다시 돌아왔다. 왜냐하면 그는 병으로 쇠약해지고 그의 정체성이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RCPG*, II, 73; *Hughes*, 324.

## 서46

- (2) 1551년 11월 28일, 헤랄더스(Heraldus)에 대한 추천서<sup>47</sup>
- (3) 1551년 11월 28일, 시몽 고랑(Simon Goland)에 대한 제네바목사회의 의견서<sup>48</sup>

46 앙투안 선생(Monsieur Antoine)에 대한 추천서. 우리 형제가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살고 있고 거의 6년 동안 프초코트로움(ptochothropium)에서 소년들도 가르치고 있으므로 그는 우리에게 선한 사람들이 그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증명 없이 왔다는 의심을 하지 않도록 이 모든 기간 동안 훌륭하게 처신해 왔다는 증명을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우리는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 우리는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그가 옮기는 곳의 사람들 에게 그는 그의 삶을 증명해 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다. 그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데 정성을 다해 왔다. 그가 호스피스 소년들을 맡았을 때 그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하고 바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직분에서 해고당하지 않았고, 그가 그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못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송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의 지위를 내어준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판단하기로 그는 명예로운 사람일 뿐 아니라 경건한 가르침에 정통해서 어떤 임무도 맡을 수 있으며 충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할 것이다. 1548년 11월 어느 날 제네바에서. 존 칼빈이 성도들의 사랑과 함께. 앙투안이란 이름은, 1548년 12월 20일 병원 기록에는 “Magister Ant. Grenet”로 기록되어 있다. *CO*, XIII, 101; *RCPG*, I, 42; *Hughes*, 86.

47 칼빈이 공회의 이름으로 뇌샤텔의 장로회에 보낸 편지. 오늘 모임 가운데 우리 형제 헤랄두스(Heraldus)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칼빈이 뇌샤텔교회의 목사들이 우리로 부터 증명서를 받기에 열망하는 사실을 알려준 후 다음과 같이 쓰기를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헤랄두스는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으로 살았다. 우리 모임들을 종종 참석했다. 그는 또한 부지런하게 경건함에 노력하였다. 하지만 교회의 공직에 자리에 사용되었을 때에 심각함과 깊은 생각 없이 행동하기에 잘못에 너무 쉽게 빠져들까 봐 그를 간절히 훈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에게 맡겨진 일을 활기와 열정 있게 감당하였다. 그의 부인에 대해서는 결혼의 합당한 매너로 행동하고 있고 [남편의] 직무의 경건하고 기록한 협력자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존 칼빈, 모두의 이름으로. 헤랄두스는 도피네에 있는 생 줄리앙(Saint-Julien)의 원주민인 혹은 파렐의 동료인 앙투안 예로(Antoine Herauld)를 얘기 하는 가능성이 크다. 그는 1549년 7월 12일에 거주민으로 인정 되었다. 같은 해 12월 16일에 (같은 사람으로 가정한다면) 그들의 지역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뇌샤텔의 목사들이 파렐과 파브리에게 추천 되었다. 또한 그가 1552년 4월 1일에 발랑쟁(Valengin)의 목사로 세워지고 그 곳에서 한 10년을 지냈다는 것이 알려졌다. 1562년 초에 그는 도피네에 있는 비엔을 향하여 떠났으며 그 이후로 그의 흔적은 사라졌다. *RCPG*, I, 77; *Hughes*, 134.

48 테르니에(Ternier)의 목사 시몽 골랑(Simon Goland)의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한 편지. 가장 귀하고 존경스러운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 사이에 교리와 영의 조화가 있고 그리스도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 우리는 협력에 노력해야하고 교회의 상태에 대한 것들에 서로 훈계해야 하기에 우리 도시에 자주

#### (4) 1551년 11월 28일, 마티외 이소티에(Mathieu Issotier)에 대한 추천서<sup>49</sup>

칼빈은 교회지도자들의 역할이 개혁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여겼던 것 같다. 그는 단호하게 교리와 윤리에서 양보하지 않았다. 때로는 화목을 위해 물러나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였다. 목사의 견책과 해임도 성찬을 앞두고 서둘러 처리하려고 했다. 카스텔리옹과 같은 경우 스트라스부르에서부터 알고 지냈지만 결국 목사선출을 반대한다. 칼빈의 신학과 교리의 철저함만큼이나 교회행정에서의 철저함이 모여져서 제네바의 모습을 형성한 것이다.

## 2. 도시와 시골교구의 갈등

시골교구의 시찰단의 방문은 일요일에 이루어졌고, 목사시찰위원은 방문한 시골교구에서 설교했다. 반면에 도시교구에서의 시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의원들이 항상 도시교구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치리회가 상설기구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골교구목사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었고 결국 도시목사들의 우월적 존재감을 상징하는 일이 되었다. 1546년에 이 법령과 함께 시찰위원들이 선정되었지만

---

드나들며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고 오히려 소산과 방탕에 만족하는 베른지역의 시몬 구랑목사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여긴다. 어떤 이들에게는 작은 일로 느껴지겠지만 말씀의 성직자로 합당치 못한 불순한 용어를 섞어 쓴다...

테르니에(Ternier)의 장로회에 포함 되어있는 베르네(Bernex)의 목사이다. 라틴어로는 "Golandus"이고 그의 동등한 프랑스어는 굴랑(Goulland)이었을 것이다. *RCPG*, I, 78; *Hughes*, 134-36.

<sup>49</sup> 마티외 이소티에(Mathieu Issotier)에 대한 증명.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직자들이 모든 거룩한 형제와 동역자들에게, 아주 가까운 베르네스 시골에서 교구를 담당하여서 우리와 오랜 시간 동안 가깝게 살고 있는 마티외 이소티에는 이웃으로서 우리는 그를 잘 알고 있다. 더욱이 그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훌륭하였고 안 좋은 소문도 없으며 순수하게 교리를 지키고 평화롭게 지냈다. 마티외 이소티에는 나중에 1562년까지 프로방스(Provence)에서 목회 하였다. 그는 세바스티앙 카스텔리옹의 처남이었고, 1563년 8월 31일에 치리회에 소환되었으며 그 이후 그는 목회를 그만 두었다. *RCPG*, I, 79; *Hughes*, 136-37.

실제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1547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결과 시민들의 압박이 있었고 목사회도 시행을 권고하였다. 결국 1548년에 처음으로 시찰이 시작되었고 제네바 영지에 속한 전체 14개 교구<sup>50</sup>에 걸쳐 시행되었다. 방문은 2년마다 이루어졌고, 1명의 목사와 2명의 시의원이 방문했으며, 목사는 3주간이상을 비우지 않도록 일정이 조정되었다.

### 베른 영토의 시골교구

한편 시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 교구도 있었다. 아르모아와 드라이양에 배치된 뒤랑<sup>51</sup>과 니노<sup>52</sup>는 베른의 영토인 샤프래 지방에서 사역하였는데 베른과의 마찰을 고려해서 시찰단이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목사회는 친 베른적 성향을 지닌 이 두 사람을 목사회에 소환하고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기 위해 출두를 공고하는 서신을 발송한다.<sup>53</sup> 그러나 이 두 목사는 참석하지 않고 불응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가게 된다. 1554년에 니노가 시의회의 허락 없이 목회지를 이탈하였을 때 레이몽 쇼베에게 드라이양에 가서 설교할 것을 시의회가 명령한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 주일에 토농집행관에 의해 심문을 받고 감금되어 무려 7년<sup>54</sup>이나 제네바와 베른의 협상으로 석방되기까지 그곳에 있어야 했다. 이보다 앞서 1552년에는 앙드레가 풍스네(Foncenex)에서 설교이후 베른의 관리에게 체포된다. 그는

50 네당(Neydens), 보세이(Bossey), 셸리니(Celigny), 장트(Genthod), 사니티(Satigny), 루생(Russin), 다르다니(Dardagny), 샹시(Chancy), 카르티니(Cartigny), 쥐시(Jussy), 풍스네(Foncenex), 방되브르(Vandoeuvre), 콜로니(Cologny), 모앵(Moens).

51 뒤랑은 1557년까지 목사직을 유지한다.

52 니노는 1554년 돌연 프랑스로 떠난다.

53 목사회가 출두를 공고하는 서신은 다음과 같다. 10월 31일에 당신에게 맡겨진 교회의 상태를 공회에서 상의할 것이며 괜찮다면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며 또한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다. 날짜를 정하고 알려준 것이 적당하고 괜찮은 순서인 것의 표시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한 형제여 잘 지내시오. 주님의 영으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지배하시기를(소망한다). 제네바, 1550년 10월 24일. 존 칼빈, 모두를 대신하여. *RCPG*, I, 74; *Hughes*, 129.

54 쇼베는 1552년 6월 3일부터 7월 25까지 수감되었다.

감옥에서 잔인하게 다루어졌고 추방되었다.<sup>55</sup>

### 벽지교구의 문제

드라이앙(Draillans)과 아르무아(Armoy)는 시골교구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벽지였다. 니콜라 프티(Nicolas Petit)는 드라이앙에서 1557년부터 1578까지 사역하다가 죽게 되는데 예정교리에 있어서 베른의 견해를 따른다는 이유로 목사회와 갈등을 겪었다. 그는 1544년부터 1557년까지는 샹시(Chancy)와 카르티니(Cartigny)의 시골교구에서 목회하다가 마지막으로 벽지교구에서 마감하였다. 제네바는 언제나 탐나는 자리였지만 시골교구와 벽지는 선호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제네바는 물론이고 베른의 영토의 일부와 지방의 많은 마을들을 통제했다. 이런 마을들을 일컬어 ‘Les villages les eglises dependante de la Seigneurie de Genesve’라 불리웠다. 1562년의 시골교구의 목사를 도시교구로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결정은 시골교구목사들의 강한 반감을 가져왔다. 많은 목사들이 반대했고 목사회는 혼란을 겪었다. 칼빈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손뼉을 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꼴을 보다니!”라고 말하였다.<sup>56</sup>

시골교구의 목사들은 제네바로 옮기기를 원했고, 시골교구는 목사직의 첫 단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장 르 개뉴(Jean le Gaigneux)가 목사의 첫 임지로 제네바에 배정된 것에 대해 시골교구의 목사들이 분개하였다.

### 3. 목사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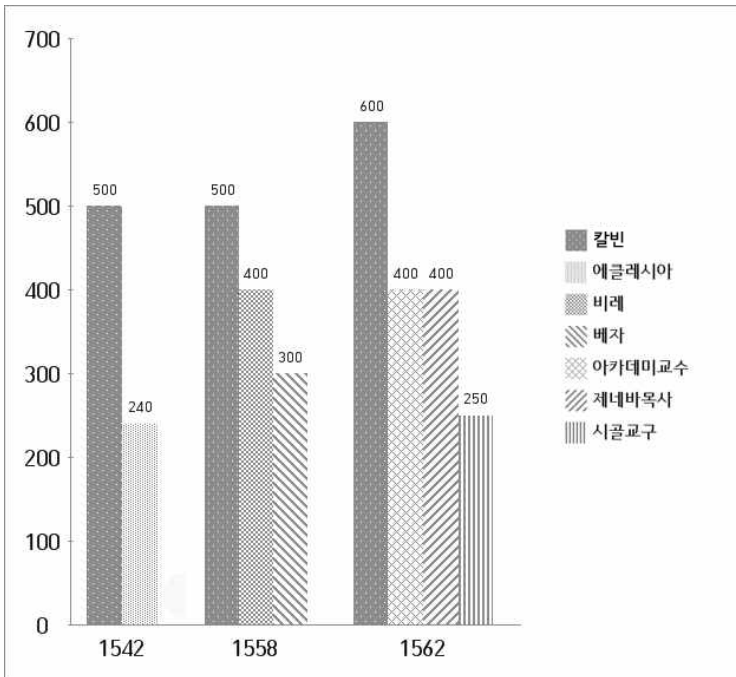
1541년의 표준법령은 제네바의 목사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5명의 목사와 3명의 조수로 정원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목사들의 생활과 사역에서 갈등을 불러왔다. 목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은 제네바의 목사이나, 시골교구, 즉 베른의 영토에 있는 제네바영지에 속한 교회의 목사인가

<sup>55</sup> RCPG, I, 132; Hughes,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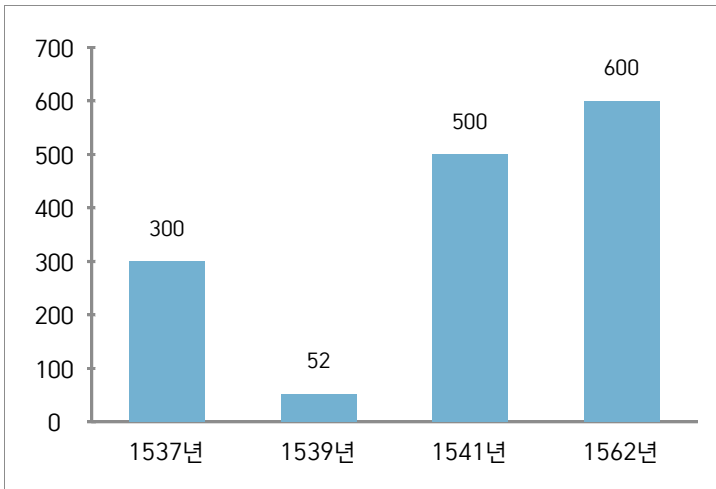
<sup>56</sup> RCPG, II, 99; Hughes, 357. “qu’est-ce que je voy avant que mourir?”

였다. 이 문제는 시의회와 목사이명, 임지결정권과 맞물려서 목사회와 가장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가파른 제네바의 인구유입은 제네바 목사 정원에 유연성을 가져오지만 임지의 문제는 칼빈의 후반기까지도 목사회에서 풀 수 없는 문제로 남게 된다. 제네바 목사회와 시골교구의 목사는 직접적으로는 임금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교회 시찰을 받아들여야 했고, 베른에서의 제네바목사들은 언제나 설교나 성찬에서 갈등에 노출되어져 있었다. 당시 목사들의 연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제네바목사들의 연봉비교(fl)〉



〈그림2. 칼빈의 연봉의 변화(f)〉



## (1) 제네바목사들의 가정과 재정상태

개신교목사들은 결혼생활을 했고, 결혼은 성직자가 옛 종교를 결별한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 중 하나가 되었다. 목사들의 임금은 제네바의 목사 시골교구의 목사에게 차이가 있었고, 목사와 아카데미교수의 차이점이 있었다. 물론 목사 간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칼빈과 베자의 연봉이 달랐고, 일반교수와 아카데미 총장의 연봉이 달랐다. 칼빈은 제네바 1차 체류시 성경교사로 임명되었고 곧 이어 제네바의 목사로 설교에까지 참여하게 된다. 이 때 금화 6크라운<sup>57</sup>을 연봉으로 받게 된다. 이후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연봉은 주 급여 1플로린(f)을 받아 연봉은 52f<sup>58</sup>으로 어렵게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1541년 2차 체류 시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는 연봉 500f<sup>59</sup>을 받게 되고 1562년에는 600f<sup>60</sup>을 받게 된다.(그림2. 참조) 한 편 제네바의 목사들은 240f<sup>60</sup>을 받았고 1558년에 300f<sup>59</sup>, 1562년에 400f<sup>60</sup>으로 인상된다.<sup>60</sup>

<sup>57</sup> 1344년 기준으로 1f=0.84crown으로 칼빈은 약 300f의 연봉으로 시작한 것 같다.

<sup>58</sup> 장수민, 『존 칼빈』, 470.

<sup>59</sup> CO, 21, 685; RCPG, II, 80-81; Hughes, 338.



그러나 1562년 제네바의 목사들이 아카데미교수와 동일한 연봉을 받을 때도 시골교구의 목사들은 250fl, 280fl, 300fl에 만족해야 했다. 당시 목회자의 생활이 다소 어려웠다는 점을 시사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1546년 6월 11일 칼빈이 목사회를 대표하여 물가폭등에 따른 목사들의 봉급문제를 시의회에 제기한 일<sup>61</sup>과 아벨 푸팽 목사가 타계한 후 그의 자녀가 고아처럼 가난에 방치되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 이것이 사회문제가 된 경우였다.<sup>62</sup> 시의회는 다음 해 전격적으로 목사들의 급료는 250fl에서 300fl로 인상하였다.

당시 제네바를 비롯한 시골교구의 목사들의 가정은 때로 윤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장 페롱이 자신의 여종을 농락한 혐의로 해임을 당하고,<sup>63</sup> 에클레시아도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에클레시아는 고리대금업에도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고, 그의 해임시 이 혐의가 추가되었다. 종종 목사들은 자신의 임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주로 베른에 있는 영지에서 목회하는 시골교구의 목사들이 목회지를 이탈하여 제네바에 머물기도 했는데 트레페로(Treppereau)가 대표적인 경우였다.<sup>64</sup>

#### 4. 제네바목사들의 일상 (표3. 참조)

제네바에는 총 세 개의 교구가 있었다. 각 교구는 주일에 네 번의 예배 가운데 최소한 세 번의 예배를 드렸고, 두 교구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중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수요일에는 새벽과 오전 8시에 두 차례 드렸다. 칼빈은 주로 아벨 푸팡과 교대로 사역했는데 그가 병석에 눕자 동료들이 대신 맡아 주었다. 제네바의 중심부는 생 피에르(S.Pierre)와 생 마들렌(S.Magdeleine)이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생 제르베(S.Gervais)가 있었다.

60 *Roget*, 4, 289.

61 *CO*, 21, 383.

62 *CO*, 21, 680. 장수민, 『존 칼빈』, 652.

63 *RCPG*, I, 58-63; *Hughes*, 109-12.

64 *RCPG*, I, 154; *Hughes*, 209-11.

제네바 사람들은 주일예배와 주중예배를 강의 양쪽에서 드릴 수 있었다.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하는 일이었다. 목사들의 설교는 주로 연속강해설교로 진행되었는데 어떤 강요를 받은 것으로는 보여 지지 않는다. 목사들은 설교 전에 결혼할 남녀의 양가에서 신청한 결혼 의사를 혼례 3주전부터 고지했고, 설교 전에 결혼식을 진행했는데 성찬이 있는 주일의 결혼은 성례의 존중을 위해서 삼가되었다. 또한 목사들은 교리의 일치를 위해 매주 공식적인 회합을 가졌다. 금요일 오전에는 주간 성경연구모임으로 모였고 오후에는 목회업무의 조정과 신임목사의 선출, 신학도론이 진행되었다. 이 모임에 한 달 이상 빠지는 것은 태만으로 여겨졌고, 견책의 대상이 되었다. 또 세 달마다 목사 상호간의 형제애적 견책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교리문답을 행하였는데 주로 젊은 목사들이 맡았다. 또한 시의원 2명과 목회자 2명이 조를 이루어 각 교구를 시찰했고, 환자를 심방했다. 특히 목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환자가 사흘 동안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환자가 원하는 목사를 부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죄수들에게 강좌를 열어 권면했고, 토요일 저녁식사 이후에는 사형직전에 있는 죄수를 위로하는 일을 했다.

한편 목사들은 목요일에 열리는 치리회에 참여하여 일종의 의무적 상담을 실시했고, 시의회에서 치리회의 장로를 선출할 때 출석하여 조언을 했다. 한편 아카데미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3명의 공립교수는 월, 화, 목요일에 오전 오후 한 시간을 강독하고 수, 금요일에는 오후 한 시간을 강독했다. 또 두 명의 신학 교수는 월, 화, 수요일의 오후에 1시간의 성경주해를 가르쳤다.

〈표3. 제네바목사들의 주간일정〉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목사회	주일오전 오후예배 설교 및 교리문답  결혼주례 성찬집례	주중예배  시의회와의 협의를 위해 출두	주중예배	새벽과 오전에 수요예배 설교	주중예배	주중예배 주간성경 연구모임 3개월마다 상호견책 목회업무 조정. 신임목사 시험	주중예배  죄수심방
치리회					치리회로 모임		종종 치리회 잔무로 회집
아카데미		오전강독 성경주해 강의	오전강독 성경주해 강의	오후강독성 경주해강의	오전강독	성경연구모 임에 의무적 참석 오후강독	성경주해 개인지도

## V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제네바교회의 목회자 양성과정과 선발과정, 임직과 목회지 이동에 대한 결론은 동시에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목회자 양성과 임직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칼빈은 제네바이아카데미를 통해서 제네바를 구성하는 지도자의 양성이 도시의 발전과 교회건설의 중요한 요건으로 보았다. 특히 목회자양성 과정에서 성경주해교육과 고전어 연구를 비롯한 목회자로서이 기본소양을 세우는 튼튼한 신학교육시스템을 가동했다. 특히 아카데미에서 목회자의 소명을 가진 후보생들에게는 현장의 목회자들이 직접 주해교육을 실시했다

는 점이 주목된다. 이렇게 신학교육의 공적 시스템 뿐만 아니라 또한 콩그레 가시용을 한 공공 신학교육시스템도 한 축을 차지하였다. 전하는 신자와 청종하는 신자들 모두에게 지속적인 신학교육시스템이 제공되었던 것이다. 또한 칼빈은 표준법령을 통해 박사를 두 번째 직분에 위치시켰다는 것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목사는 또한 교사였다. 특히 제네바의 목사는 곧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수이기도 했다. 신학은 현장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둘째, 제네바교회의 목사들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이 있었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에는 목회자 윤리규정이 없다. 오직 예배모범만이 윤리적인 측면을 보충하고 있는데 반해 권징조례는 매우 발전 되어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학교육에서도 목회자 윤리에 대한 과목이 전무한 상태이다. 목사회 회의록은 목회자들의 윤리와 연루된 많은 사건들이 가감 없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목회자의 윤리문제를 강단의 붉은색 용으로 가려진채 참된 교회건설은 요원 하기만 한 것이다.

셋째, 또한 세 달에 한번씩 진행되었던 형제애적 견책은 오늘날 교단정치와 치리회의 세속성에 대한 성찰을 던져주고 있다. 권징시스템이 교회가 거룩을 잃지 않도록 예방적이고, 공동체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권징은 공개적이고 절차적이었다. 볼셰과 세르베투스의 사건을 기록한 회의록은 권징의 공교회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주변 개혁도시들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각 개혁교회의 목사회가 보내온 회신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이단을 규정하고 성만찬과 교리적 일치를 이루는 일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은 오늘 현대교회가 깊이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넷째, 목사선출에서 교리와 설교, 윤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

다는 점이다. 오늘날 임직시스템은 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상황이었지만 제네바교회는 교구시스템이어서 교구 안에 총원될 목사를 제네바목사회가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임직시스템에서도 공교회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목사의 소위 이력서가 아닌 철저한 교리검증과 주해, 설교를 통해 선출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실로 돌아와서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적어도 공동의회(제네바교회 신자회)에 단독후보를 내기 전에 매우 전문성을 가진 목회자 그룹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기업체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임직시스템은 다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A Study on The election Pastors of Geneva Church in  
16th century According to RCPG**

Jong Gu Lim (Green Pastures Church)

Calvin was born in 1507 and died in 1564. He spent the first half of his life, 28 years, getting himself ready for Geneva and spent the second half of his life, 28 years, getting involved in the church construction. His first stay in Geneva in 1536 like an emergency landing was filled with ups and downs such as his deportation, return, struggle and construction. However, Calvin, the French exile, considered Renaissance as a fulcrum and contributed himself to a facilitator opening the gate of the modern society. The reformer was brought up without his mother in his childhood, but he could be fed and grown by humanism while studying in Paris. Besides, he grew up to be a humanist and theologian, and overcame the fear of death given by the huge religious authority in the battlefield of the church construction. He was also dedicated to establishing the most ideal christian city.

Nevertheless, Calvin's theology and works are estimated in different points of view. For examples, he is considered as a frontier opening the modern era while he is regarded as a dictator in Geneva. He is not only highly admired but also

severely underestimated. Calvin was a policy maker and minister. Calvin's ideal and Geneva's reality in the church and the state, freedom and tolerance and theology and ethics reveals that he was in the dilemma of his church construction. If so, what is the just estimation about Calvin? What messages are conveyed in his theology and thoughts toward present societies and churches? As Calvinism adheres to Scholasticism and Sorbonneism in Korean churches, the research on RCPG of CPG is an alternative to reach reformism more widely and it is also inevitable demand for a well-balanced study.

The RCPG plainly reveals Geneva's Reformation and its struggle just like a morning newspaper. Unexpected events, urgent prosecution letters as well as the tension in the scene different from the description of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in the public written question make a bit embarrassed those who get used to Calvin texts. Supposing that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s the theology of Geneva, RCPG is the scene of Geneva.

**Key Words:** RCPG, The Company of Pastors in Geneva, Calvin, The Election of Pastors, Congrégation

## [참고문헌]

## I. 1차 자료

## 외국 문헌

1. RCPG\_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ève  
Bergier, Jean-François(ed), *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1546-1553* Tome Premier. Geneva: Droz, 1964.
- Kingdon, Robert M.(ed), *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1553-1564* Tome. II. Geneva: Droz, 1962.
  
2. RCG\_Registers du Conseil de Genève  
Dubuis, Hochuli(ed), *Registres du Conseil de Genève à l'époque de Calvin*, Tome I. du 1er mai au 31 décembre 1536, Geneva: Droz, 2003.
- Mekkey, S. Coram et Dubuis, Hochuli(ed), *Registres du Conseil de Genève à l'époque de Calvin*, 1537 Tome I: Du 1er mai au 31 décembre 1536 Tome II: Du 1er janvier au 31 décembre 1537. Geneva: Droz, 2003.
- Mekkey, S. Coram et Graf, M. Brunscwig, Bron, G. Olivier, et Dubuis, Hochuli (ed), *Registres du Conseil de Genève à l'époque de Calvin*, Tome III, du 1er janvier au 31 décembre 1538. Geneva: Droz, 2006.
- Chazalon, Christophe et Mekkey, S. Coram(ed), *Registres du Conseil de Genève à l'époque de Calvin*, Tome IV, du 1er janvier au 31 décembre 1539. Geneva: Droz, 2009.



### 3. RConsistG\_Registers du Consistoire de Genève

Kingdon, Robert M. et Watt, R. Jeffrey(ed), *Registres du Consistoire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Tome I, 1542-1544. Geneva: Droz, 1996.

Kingdon, Robert M.(ed), *Registres du Consistoire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Tome II, 1545-1546. Geneva: Droz, 2001.

Kingdon, Robert M. Lambert, Thomas A., Watt, M. Isabella et Mcdonald, Wallace(ed), *Registres du Consistoire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Tome III, 1547-1548. Geneva: Droz, 2004.

Kingdon, Robert M. et Mcdonald, Wallace. *Registres du Consistoire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Tome IV, 1548, avec extraits des Registres du Conseil, 1548-1550. Geneva: Droz, 2007.

Kingdon, M. Robert, et Mcdonald, Wallace. *Registres du Consistoire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Tome V (20 février 1550 - 5 février 1551) Geneva: Droz, 2010.

Wandel, Plamer Lee et Mcdonald, Wallace(ed), *Registres du Consistoire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Tome VIII (25 mars 1553-1er février 1554) Geneva: Droz, 2014.

### 4. LRAG\_Le Livre du Recteur de l'Académie de Genève

Suzanne Stelling-Michaud. *Le Livre du Recteur de l'Académie de Genève : 1559-1878*, T. I, Le Texte. Geneva: Droz, 1959.

Suzanne Stelling-Michaud. *Le Livre du Recteur de l'Académie de Genève : 1559-1878*, T. II, Notices biographiques des étudiants : A-C. Geneva: Droz, 1966.

Suzanne Stelling-Michaud. *Le Livre du Recteur de l'Académie de Genève : 1559-1878*, T. III, Notices biographiques des étudiants : D-G. Geneva: Droz, 1972.

Suzanne Stelling-Michaud. *Le Livre du Recteur de l'Académie de Genève : 1559-1878*, T. IV, Notices biographiques des étudiants : H-M. Geneva: Droz, 1975.

Suzanne Stelling-Michaud. *Le Livre du Recteur de l'Académie de Genève : 1559-1878*, T. V, Notices biographiques des étudiants : N-S. Geneva: Droz, 1976.

Suzanne Stelling-Michaud. *Le Livre du Recteur de l'Académie de Genève : 1559-1878*, T. VI, Notices biographiques des étudiants : T-Z. Geneva: Droz, 1980.

#### 5. Calvin's Works\_Original Text

*Ioannis Calvini opera omnia quae supersunt.* ed. G. Baum, E. Cunitz, et E. Reuss. 59 vols. Brunswick: C. A. Schwetschke, 1863-1900.

*Ioannis Calvini Opera Omnia denuo recognita et adnotataone critica instructa notisque*, v. I. Backus u. a., Genf 1992.

\_\_\_\_\_. *Ioannis Calvini Epistolae*. Vol I (1530-1538) Ediderunt cornelis augustijn frans pieter van stam Geneva: Droz 2005.

#### 6. Calvin's Works\_English Translation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559). ed. John T. McNeill and tr. Ford L.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Philip E. Hughes,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Wipe and Stock, 1966.

Kingdon, M. Robert.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vol.1, 1542-1544. Grenad Rapids: The H. H.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 2000.

M. Wallace Mcdonald,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 Time of Calvin*, Vol 1, 1542-1544 William B. Eerdans, 1972.
- Monter, E. William. *Calvin's Geneva*, Huntington, NY: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75.
- \_\_\_\_\_. *Studies in Genevan Government (1536-1605)*. Geneva: Librairie E. Droz, 1964.

### 7. de Genève\_Resource

- Stauffenegger, Roger. *Église et Société Genève au XVII Siècle Texte*. Geneva: Droz, 1983.
- \_\_\_\_\_. *Église et Société Genève au XVII Siècle Note*. Geneva: Droz, 1984.
- Roget, Amédée. *Histoire de Peuple de Geneève depuis la Réforme Jusqu'a L'escalade Tome premier 1536-1542*. Genève john jullien, Libralre-editeur Place du Bourg de four, 32, 1870.

### 한글 번역

- 칼빈, 존. 『칼뱅작품선집 I』. 박건택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8.
- \_\_\_\_\_. 『칼뱅작품선집 II』. 박건택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9.
- \_\_\_\_\_. 『칼뱅작품선집 III』. 박건택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9.
- \_\_\_\_\_. 『칼뱅작품선집 IV』. 박건택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9.
- \_\_\_\_\_. 『칼뱅작품선집 V』. 박건택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9.
- \_\_\_\_\_. 『칼뱅작품선집 VI』. 박건택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10.
- \_\_\_\_\_. 『칼뱅작품선집 VII』. 박건택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11.
- \_\_\_\_\_. 『칼뱅서간집 I』. 박건택 역. 서울: 크리스천 르네상스, 2014.
- \_\_\_\_\_. 『칼뱅의 예레미야설교』. 박건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_\_\_\_\_. 『칼뱅의 시편 119편설교』. 박건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_\_\_\_\_. 『기독교강요 초판』. 문병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 \_\_\_\_\_. 『기독교강요 최종판』. 김종흡의 3인 공역. 3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_\_\_\_\_. 『칼뱅의 신학논문들』. 황정욱, 박경수 역.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 \_\_\_\_\_. 『칼빈의 사무엘하설교1,2,3』.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1994.
- \_\_\_\_\_.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상)』. 김동현 역. 서울: 서로사랑, 2010.
- \_\_\_\_\_.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하)』. 김동현 역. 서울: 서로사랑, 2010.
- \_\_\_\_\_. 『칼빈의 이사야설교』. 김동현 역.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1992.
- \_\_\_\_\_.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 \_\_\_\_\_. 『칼빈의 예정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 \_\_\_\_\_. 『요한네스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박위근, 조용석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8.